

〈제2세션〉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보도와 언론조정

- **진행** : 박수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패널** : 강서연, 김어진, 김진성, 노영진, 안용진,
이해영, 정세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문중(언론중재위원회 조사관, 변호사),
김정민(언론중재위원회 조사관)

〈제2세션〉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보도와 언론조정

▶ 토론개요

제2세션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도한 4개의 실제 언론 보도 사례를 가지고, 로스쿨 관련 보도의 문제점과 언론조정중재제도를 통한 정정보도 청구 등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첫 번째 쟁점은 ‘오보와 상당성’이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의원실에 제공한 자료를 기초로 서울대 로스쿨이 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이 안되는 ‘법조윤리’ 과목을 폐강했다는 취지의 〈별지 1〉 기사로 관련 쟁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두 번째로, 졸업생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로스쿨이 학점을 변칙적으로 부여하고 있다는 취지의 〈별지 2〉 기사에서는 이론적 가능성만을 가정한 가상보도와 공공의 이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세 번째로, 로스쿨생과 사법연수원생의 출신지와 거주지를 비교한 〈별지 3〉 기사와 변호사 시험 커트라인을 사법시험이 아닌 공인회계사 시험과 비교한 〈별지 4〉 기사에 대해서는 분석/해설 기사에서의 방법론적 오류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패널들은 로스쿨과 언론사측 대리인으로 역할을 분담해 토론을 진행하였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참석한 2명의 조사관은 실무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발표하였다.

〈논의사례〉

〈별지 1〉 「취업 도움 안되면 줄줄이 폐강, 로스쿨의 학원화」

(2011년 7월 18일자 조선일보)

〈별지 2〉 「웬만하면 A, B 학점 ... 로스쿨 성적 뺑뺑기 꼼수」

(2012년 2월 23일자 중앙일보)

〈별지 3〉 「부잣집 자녀가 더 좋은 로스쿨 갔다」

(2012년 4월 11일자 중앙일보)

〈별지 4〉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 치른 변호사시험 커트라인이 43점

(100점 만점 기준)이라는데... (2012년 3월 27일자 조선일보)

▶ 사례 및 쟁점소개

박 수 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이 출범한 지 4년째 되는 올해 기준으로 여러 포털사이트를 기준으로 로스쿨과 관련한 기사를 검색해보면, 대략 26,000건의 기사가 검색된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보다 먼저 도입된 의학전문대학원 관련 기사가 약 9,000건인 것과, 경영전문대학원 관련 기사가 약 10,900건에 그친 것과 비교해보면,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사가 많이 쏟아지는 만큼, 그와 관련한 오보나 일방적 내용의 기사가 제법 많이 존재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및 중재를 요청한 사례는 단 1건(2011서울조정163)³⁷⁾이다. 이 사건은 경향신문에서 2011년 2월 12일 「'실무수습'이 사실상 면접... 재학생들 로폼에 목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화여대 출신 로스쿨 진학생의 수가 100단위가 차이나는 오기가 있어 바로잡은 사건이다. 그러나 이는 본격적으로 진위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명백한 정보의 오기에 해당하여 조정에 돌입하기 이전에 합의되어 수정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과 관련한 기사들을 살펴보면, 별지에 언급한 기사의 제목만 읽어도 느껴지는 뉘앙스처럼 대체로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주를 이룬다. 예컨대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 대한 우려와 사법시험폐지에 대한 반감, 일명 '돈스쿨' 논란에 이어지는 법학전문대학원 진학학생의 가정환경분석, 그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생의 다양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취지의 퇴색화, 학점뺑튀기 논란 등을 이유로 한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실력부족문제 등이다.

- <별지 1> 기사 관련

본 토론회에서 다룬 「취업 도움 안되면 줄줄이 폐강, 로스쿨의 학원화」(2011년 7월 18일자 조선일보) 제목의 기사에서 쟁점 사안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2011년 1학기 '법조윤리' 과목 및 '법률정보조사 및 법문서작성' 과목이 폐강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법학전문대학원측에서는 신청인의 입장에서 첫째로, 2011년 법조윤리과목과 법률정보조사 및

37) 2012부산조정20 사건의 경우 동아대가 등록금을 인하하기 위해 로스쿨 장학금을 축소했다는 보도에 대해 조정이 성립되어 정정보도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 사건은 로스쿨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 아니므로 제외하였다.

법문서작성 과목은 필수과목으로서 2학년의 130여명이 실제로 본 과목을 수강했다는 점, 둘째로, ‘법조윤리’라는 과목의 이름이 주는 인상상 법조윤리가 로스쿨의 학원화 때문에 폐강되었다는 인상을 주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 및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이 ‘법조윤리’도 없는 법조인을 양성하는 기관이라는 인상을 주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는 부분이 문제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피신청인이 되는 조선일보측에서는 첫째로, 본 기사의 ‘법조윤리’ 등의 과목의 오보 부분은 전체 내용에 비해 사소한 것으로서 정정보도를 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 둘째로 본 기사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의원실에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다는 점 등이 인정되어 그러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의 청구에 대해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 <별지 2> 기사 관련

「웬만하면 A, B 학점 ... 로스쿨 성적 뺨튀기 꼼수」(2012년 2월 23일자 중앙일보) 제목 기사에 대해 논의 가능한 사안은 이론적 가능성을 실제 현상인 것처럼 실증적인 자료 없이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이다.

신청인 격이 되는 법학전문대학원 측에서는 첫째로, 현실적 자료 없이 가상적 예시를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과 둘째로 확인된 바 없는 학점인플레이션을 기정사실화한 부분, 셋째로 학점 인플레이션과 학사경고자의 수가 인과관계에 있는 것처럼 서술한 부분 등을 문제삼을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피신청인 격이 되는 중앙일보측에서는 첫째로 일반인이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부여 제도에 허점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예시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둘째로 본 기사에서는 상관관계를 보여준 것이지 인과관계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고 대응가능할 것이다.

- <별지 3> 기사 관련

「부잣집 자녀가 더 좋은 로스쿨 갔다」(2012년 4월 11일자 중앙일보) 제목의 기사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은, 법학전문대학원생과 사법연수생을 비교할 때 사법연수생은 ‘출신지’를, 법학전문대학원생은 ‘거주지’를 기준으로 비교를 한 부분이 조정 및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이다.

신청인 격인 법학전문대학원측에서는 ‘출신지’와 ‘거주지’가 동일기준이라고 판단한 부분이

반론보도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에 해당되며, 그 외 비교군의 연령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통계자료를 분석한 기사에 있어서 비교군을 잘못 선정한 부분이 방법론적 오류에 해당하고 따라서 정정 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한편, 피신청인 격인 중앙일보에서는 통계자료를 분석하는 것은 엄연히 ‘의견의 표명’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맞설 수 있을 것이다.

- <별지 4> 기사 관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 치른 변호사시험 커트라인이 43점(100점 만점 기준)이었는데… (2012년 3월 27일자 조선일보)’ 제목의 기사의 경우도 같은 법조직역의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의 커트라인 점수가 동일하게 40점대인 것을 누락하고 커트라인이 60점대인 회계사 2차 시험과 변호사시험을 비교해 상대적으로 변호사시험의 커트라인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기사작성시 비교군을 결정하는 문제가 ‘사실적 주장’의 문제인지 ‘의견표명’의 문제인지가 논의 가능할 것이다.

지금까지 문제되는 기사를 살펴보고, 각각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역할에서 가능한 논점들을 광범위하게 살펴보았다. 미래의 법전문가로서 감정적으로 기사에 대해서 대응하기 보다는, 법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관련한 법적 논점을 검토해보고, 언론사 입장에서는 잠재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상호 검토해보는 발전적 토론이 있기를 희망한다.

쟁 점 1 : 오보와 상당성

- <별지 1> 기사를 중심으로 -

▶ 로스쿨측 입장

안 용 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법조윤리와 법률정보조사 및 법문서 작성 과목은 전공 필수과목이다. 단지 전산상의 코드 변경으로 인해 폐강으로 기재되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폐강의 사실이 없다. 따라서 본 과목들이 폐강되었다는 기사의 내용은 명백히 오보이며, 이로 인해 일반 독자들에게 서울대 로스쿨생의 기본적 소양과 윤리의식을 의심케 할 만한 사회적 평가저하를 야기했으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해당 부분의 오보는 사소한 부분이 아니다. 법조윤리와 법률정보조사 및 법문서 작성 과목은 전공 필수 과목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학전문대학원생 전원이 수강하였다. 따라서 해당 과목이 폐강되었다는 것은 중대한 오보이다.”

별지 제1기사에 대해 로스쿨측에서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2011년 학사과정 중 법조윤리와 법률정보조사 및 법문서 작성 과목은 폐강된 바가 없습니다.”라는 문구의 정정보도청구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데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다.

본 사안의 쟁점은 세 가지로 (1) 기사 내용 중 일부의 사실에 대한 정정보도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2) 당해 기사의 내용이 로스쿨 학생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 (3) 언론사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상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먼저 정정보도청구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언론중재법 제14조 (정정보도청구의 요건)는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

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그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는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윤리와 법률정보조사 및 법문서 작성 과목은 전공 필수과목이다. 단지 전산상의 코드 변경으로 인해 폐강으로 기재되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폐강의 사실이 없다. 따라서 본 과목들이 폐강되었다는 기사의 내용은 명백히 오보이다. 또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14조를 보면 정정보도를 청구하는데 있어서는 언론사의 고의나 과실 또는 위법성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기한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 정정보도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내용이 세부내용의 사소한 차이에 불과하다고 언론사측은 반론하고 있으나, 해당 부분의 오보는 사소한 부분이 아니다. 법조윤리와 법률정보조사 및 법문서 작성 과목은 전공 필수 과목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학전문대학원생 전원이 수강하였다. 따라서 해당 과목이 폐강되었다는 것은 중대한 오보이다.

또한 기사의 자료가 된 법학전문대학원의 폐강 과목과 수를 살펴보면 문제가 된 부분이 세부적인 내용에서 사소한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언론사측 주장은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사에서는 2011년 1학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13개 과목이 수강인원 미달로 폐강되었다고 하여 다른 대학들과 비교해 가장 많은 수의 폐강이 이뤄진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중 61.5%에 달하는 8개 과목이 ‘법조윤리’와 ‘법률정보조사 및 법문서 작성’ 과목이다. 따라서 이들 과목을 제외한다면 실질적으로 폐강된 강의는 5개에 불과하다. 이를 두고 약간의 차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손해배상청구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본 기사에서 단지 한 두개 과목의 폐강여부만이 사실과 다르다 하여 그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언론사측 반론이 가능하겠다. 그러나 명예훼손 여부를 단지 일부과목의 폐강이라는, 표면적으로 적시된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대법원의 입장을 살펴보면,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53214 판결에서 “신문 등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도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위의 판시내용은 지금까지 일관된 대법원의 입장이다. 이와 같이 기사의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여부는 단지 오보된 사실 자체만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자 전체의 취지와 가지는 연관성, 사용된 어휘가 사회일반과 독자에 대해 가지는 의미와 역할, 인상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요구된다.

이 사안에서 법조윤리가 폐강되었다는 사실은 단지 한개 과목이 폐강되었다는 사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우선 이 기사의 전체적인 성격은 로스쿨 학사운영에 대한 비판적 분석에 있고, 그 초점은 ‘로스쿨 학원화’라는 것에 맞춰져 있다. 따라서 독자의 입장에서 볼 때 법조윤리의 폐강이란 취업에 도움이 안된다는 이유로 로스쿨 학생들이 기본적인 윤리의식조차 배우지 않는다는 의미로 비춰질 수 있다. 또한 법조윤리라는 과목이 일반인에게 가지는 의미는 특별하다. 사람들의 눈에 법조인은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할 집단이고 따라서 윤리는 이러한 직업적 소명과 맞닿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를 고스란히 표출하고 있는 법조윤리과목을 학생들이 외면했다는 사실은 이들이 예비법조인으로서의 소명의식과 윤리의식을 결여하였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실제 이 기사가 나간 이후 몇몇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이 실무수습 현장에서 ‘어떻게 법조윤리도 안들었냐’는 핀잔을 들은 경험이 있다고 한다.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하여 살펴보면, 본 기사에 근거가 된 자료는 국회의원실에서 제공된 것이고 그 출처가 국가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에 있는 만큼 기자는 이를 신뢰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언론사 측 반론이 가능하겠다. 그러나 신뢰할 만한 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라 하더라도 원천적으로 기자의 주의의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특히 이번 사안과 같이 특정 집단에게 피해가 있을 것이 예상되는 비판적인 기사에서 일수록 진실을 확인하여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주의의무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법조윤리는 가장 기본적인 전공 이수과목으로서 로스쿨 학생이라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으로 변호사시험과 더불어 법조윤리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법조윤리과목이 폐강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품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고 따라서 관계자나 로스쿨 학생들을 통해 사실 확인을 거쳤어야 한다. 대법원 1998. 5. 8. 선고 96다36395 판결에 의하면,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기사의 성격, 정보원의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 1997.9.30. 97다24207 판결은 “(위법성 조각사유인)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사의 성격상 신속한 보도가 요청되는 것인가, 정보원이 믿을 만한가, 피해자와의 대면 등 진실의 확인이 용이한 사항인가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라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이 제시한 이러한 기준들을 가지고 볼 때, 우선 사실확인 및 검토작업이 다소 시간을 지체시킨다 하여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될 만큼 신속성이 요구되는 기사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15개 대학 각각의 모든 사정을 알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법조윤리 과목의 경우 합리적 의심을 품고 간단한 전화 문의나 심지어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그것이 전공필수과목으로 수강인원미달로 인한 폐강이 의미가 없는 사실일 뿐이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로스쿨에 대한 유례없이 많은 언론보도가 쏟아지는 지금의 상황에서, 부정확한 사실에 의한 보도는 로스쿨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넘어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양산하여 피해의 정도가 확대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할 때, 언론은 이러한 ‘피해가능성’에 대해 인식하고, 로스쿨에 관해 비판적으로 분석한 당해 기사에서는 보다 신중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정정보도청구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진실하지 아니한 정보가 있다면 언론사의 고의과실, 위법성 여부를 불문하고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폭넓게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본 기사에서 문제된 과목들이 폐강되었다는 것이 오보로 입증되면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때 독자에게 주는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본다는 전제하에, 본 기사에서 법조윤리가 폐강되었다고 적시된 부분은 일반인에게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의 윤리소명 의식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여 이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 비록 기사의 자료가 국가기관에서 제공된 것이라고는 하나 그렇다고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범위에서 기자의 사실확인 및 주의 의무가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당해 사안처럼 단순한 사실의 보도가 아닌 당사자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의견이 포함된 기사에서는 더욱더 주의의무의 수준이 높아야 할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명예훼손에 따른 민/형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 언론사측 입장

노 영 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비록 실질적으로는 폐강의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산상으로는 폐강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객관적인 자료상에서는 폐강의 사실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법조윤리 등 과목이 폐강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기사에 제시된 전체 내용에 비해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더욱이 기사의 전제가 된 폐강과목에 대한 자료는 국회의원실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언론기관에서는 자료의 출처를 생각할 때 이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하기 어려웠을 것이 자명하다.”

<별지 1> 기사에 대한 논의의 주된 쟁점은 법조윤리와 법률정보조사 및 법문서 작성 과목에 관련된 것으로서, 그 사실 여부와 오보 입증 시의 정정보도청구와 손해배상 청구가 문제시되었다. 더 나아가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관련 사실의 오보가 공신력 있는 정부관계부처로부터 제공된 문서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위법성 조각이 인정되는지에 대해 논쟁이 이루어졌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기사의 오보 사실은 ‘법조윤리’와 ‘법률정보조사 및 법문서 작성’ 두 과목의 폐강 사실에 관한 부분이다. 실제로 법조윤리 등의 과목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과정 상 필수과목으로서 2011학년도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의 해당 학년 학생들이 과목을 수강한 바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자료에 의하면 비록 실질적으로는 폐강의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산상으로는 폐강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수강 코드의 변경으로 인한 전산상 처리 오류에 말미암은 현상으로서 실질적으로는 폐강의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인지되는 객관적인 자료상에서는 폐강의 사실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기본적인 폐강의 사실조차 사실이 아님이 인정된다면 정정보도청구와 손해배상 청구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부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4조는 정정보도청구

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며 제2항에서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사안과 같이 기사의 오보가 문제되는 경우에 설령 피해자 측에서 언론사 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가 규정된 기한을 초과하지 않고 오보사실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정정보도청구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에서는 언론중재법 제14조에 의한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해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함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에서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즉 법조윤리와 법률정보조사 및 법문서 작성 과목이 폐강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기사에 제시된 전체 내용에 비해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기사의 전체적인 맥락을 따져 볼 때 일부의 폐강 사실이 실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기사 전체가 문제 삼고 있는 것처럼 취업에 유리한 과목에 수강생이 집중되는 로스쿨 학원화에 대한 반증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사소한 내용에 작은 오류가 있다고 해서 일일이 정정보도가 요구된다면 언론은 스스로 사전검열을 하여 기사를 내보낼 수밖에 없게 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는 크게 침해될 수밖에 없다.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이 밝혀져야 할 것인데, 전산상 폐강으로 기재된 과목들에 대한 오보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설령 오보 사실이 입증되어 정정보도청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실은 전체 내용에 비해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여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나는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는 인정될 수 없다.

설령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기사의 오류가 인정되고 정정보도청구가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의 적시로 인해 법학전문대학원 혹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명예가 훼손되었

다고 보기는 어렵다.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³⁸⁾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볼 때, 실제 폐강되지 않은 법조윤리 등의 과목이 폐강되었다는 기사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 전체의 인격적 가치가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타당하지 않다.

언론중재법은(제5조 제2항 제2호) 언론 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설령 진실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그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책임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를 생각할 때, 이는 설령 기사에서의 허위 사실 적시를 통해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언론기관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라 여겨지며, 대법원 또한 같은 의견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 1988.10.11. 선고 85다카29 판결을 살펴보면 “형사상으로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위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실시되고 있다.

기사의 전제가 된 폐강과목에 대한 자료는 국회의원실에서 전달된 자료이며, 국회의원실에서는 그 자료를 정부관계당국인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전달받은 바 있다. 언론기관에서는 자료의 출처를 생각할 때 이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하기 어려웠을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사안에서 설령 기사의 내용이 법조윤리를 학생들이 기피하였다는 인상을 주었다거나, 그와 같은 사실이 일반인에게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심어주었다고 치더라도, 본 기사는 충분히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비판기능은 언론기관의 주요 기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타인의 명예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기사를 신게 되는 경우가 존재할 것이고, 또한 이 과정에서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의 경험이나 당사자에 대한 취재가 아닌 제3자를 취재한 결과를 토대로 기사

38)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등의 일관된 입장

가 작성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임을 감안할 때, 기사 내용의 정확함은 언제나 담보되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명예훼손의 가해자로 기사 작성자를 상정하여 언론기관의 주의의무를 문제 삼는다고 할지라도 이는 보도 행위라는 역할 수행에 국한된 것일 뿐 기사내용이 될 사안 자체에 대해 전문가가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실제 현실에서는 방대한 제보와 보도경쟁에 시달리는 기자들보다 보통의 일반인이 언론매체에 기고하는 경우가 사안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많은 만큼 기사를 작성하는 자가 언제나 사안에 대한 전문가적 지식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해야 할 주의의무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본 기사의 경우 15개 대학에 대해 수십 개에 달하는 폐강과목의 진위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은 기사의 신속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을 고려하더라도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물론 기사 작성자에게 과실을 인정할 수도 없을 것이다.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입장에서는 사실 확인의 용이성을 이유로 비록 정부관계부처로부터 전달된 자료라 할지라도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 조각을 부정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내부자가 아닌 이상에는, 언론기관을 비롯한 외부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과목이 전공필수과목인지, 폐강된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주의를 갖는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자료상으로 볼 때도 일부 대학(전남대학교)의 경우 ‘학과요청에 의한 폐강’이라는 별도의 사유를 기재하여 수강신청 미달의 경우와 구별하고 있는 반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자료 자체의 문면상 자료의 정확성을 의심하게 하여 주의의무를 가지게 할 만한 별도 기재 사항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자료를 보고 언론기관이 자료에 문제가 있음을 짐작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더불어 사실 확인이 관계자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을 통한 확인에 의해 용이하다고 할지라도 이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 정부관계부처로부터 제공된 문서보다 진실성이 높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언론기관으로서 가장 진실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자료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 확인을 거친 후에도 자료의 문제를 발견할 수 없었다면 그 경우에는 진실하다 믿을 상당성을 인정하여 언론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언론보도의 허위가 밝혀지고 입증되어 정정보도청구가 인정되고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

원 학생들에 대한 명예훼손의 사실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명예훼손의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언론기관에는 과실이나 위법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기사를 작성하는 측에서 볼 때 자료를 의심하게 할 만한 사항은 전혀 찾아볼 수 없으므로 언론기관은 그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기사의 제목부터 다소 자극적인 문구가 사용됨으로써 기사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볼 때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입장에서는 기사에 공감할 수 없게 하는 요소가 다수 존재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법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때, 실제로 기사에서 문제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은 법조윤리와 법률정보의 조사 및 법문서 작성 과목의 폐강 사실이 실재가 아니었다는 매우 작은 부분밖에는 없다. 그마저도 실질적으로는 수강이 이루어진 바 있더라도 전산상으로는 폐강으로 기재되어 언론기관의 입장에서는 이를 오보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더 나아가 정정보도는 인정될 여지가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명예훼손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는 없다. 과목의 폐강에 대한 기사만으로 학생들에게 인격적인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극히 어려울 뿐 아니라, 기사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한 것으로서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쟁 점 2 : 가상보도와 공공의 이익

- <별지 2> 기사를 중심으로 -

▶ 로스쿨측 입장

강 서 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수강신청 인원의 절반 이상이 수강철회를 하는 가정에 근거해 기사를 작성했는데, 이러한 가상 상황은 지나치게 극단적이고, 실제로 발생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에게는 로스쿨의 학사운영이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그러나 ‘가상’으로 제시된 내용이므로 정정보도청구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반론보도청구는 가능할 것이다. 특히 제목과 본문에 “웬만하면 A, B학점”이라는 내용을 매우 강조하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보도를 접했다고 한다면 이를 사실적 주장으로 받아들여서 로스쿨의 학사운영에 대해서 오인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반론보도청구를 면책시켜주는 것은 곤란하다.”

중앙일보 2012.02.23.일자 <웬만하면 A, B 학점 ... 로스쿨 성적 뺨튀기 꼼수>의 기사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현상에 대한 가상적인 상황만을 제시함으로써 기사를 작성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 현황이나 수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썼는데 이러한 기사에 대해서도 언론 조정·중재를 통해서 대응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왜냐하면 이는 ‘가상’으로 제시된 상황일 뿐이기 때문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정보도청구의 요건)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반론보도청구는 가능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언론중재법은 반론보도청구에 대하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언론중재법 2조 17호의 정의조항에 따르면 반론보도란 ‘언론의 보도 내용의 진실 여

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비록 진실하더라도 반론보도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에 대해 로스쿨 측이 반론보도를 신청한다면, “로스쿨생은 웬만하면 A, B 학점을 받는 것이 아니며, 서울대학교 학사관리제도와 학점 분포는 명백한 인과관계가 없고,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도 확인된 바 없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가상으로 만들어진 상황을 생각해 보건대 수강신청 인원의 절반 이상이 수강철회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만 제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가상 상황은 지나치게 극단적이고, 실제로 자주 일어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에게는 로스쿨의 실제 사정과 다르게 학사운영이 과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주게 되어 이는 결과적으로 독자들에게 로스쿨에 대한 과도하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기사를 쓴 목적은 실제 상황을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반론이 당연히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오히려 로스쿨의 학점 제도의 허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실제로 그러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적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기사에서는 학점 제도를 적용할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며, 기사는 현재 로스쿨 학생들이 웬만하면 A, B 학점을 받고 있다는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현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사에서 가정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명시하였기 때문에 독자로 하여금 로스쿨에 대한 과도하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론 또한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기사에는 실제 학사운영이 가상적인 상황과 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내용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에 관한 판례인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를 검토해 본다면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판례에서는 “언론보도는 대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구별기준 자체가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양자를 구별할 때에는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 뿐만 아니라 당해 언론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가상적인 내용이라는 이유로 반론보도의 청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판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들을 근거로 가상의 상황을 제시하였더라도 이러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비교衡量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으로 보았을 때, 본 기사는 제시된 가상의 상황이 지나치게 극단적이어서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목과 본문에 “웬만하면 A, B학점”이라는 내용을 매우 강조하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했다고 한다면 이를 사실적 주장으로 받아들여서 로스쿨의 학사운영에 대해서 오인하고, 존재하는지 확인된 바 없는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이 존재한다고 생각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단순히 가상적 상황의 제시라는 점을 이유로 반론보도의 청구를 면책시켜주는 것은 곤란한 것이다.

또한 본 기사에는 더 큰 문제점이 있다. 기사를 보면 처음에는 제도상 발생 가능한 가상적인 상황으로 학점 인플레이션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내용으로 서술되어 있지만, 중반부 이후의 보도는 학점 인플레이션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기사의 중반부에는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은 서울대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는 이미 서울대학교에는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단정적인 문장으로, 그러한 현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구체적으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사경고자의 수가 2명인 것의 이유가 학점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인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여 독자로 하여금 학사 경고자가 두 명뿐인 것은 온전히 학점 인플레이션 때문인 것이라고 오해하게 할 여지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학점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고, 학사경고자의 비율이 타 학교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다면, 이 사이에서 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하더라도, 상관관계는 의심해볼 수 있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이러한 입장에 서게 된다면 상관관계의 존재가 의심되는 이상, 이를 지적하는 기사를 작성하는 행위는 당연히 허용된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 선다면 학점인플레이션이 서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문장은 학점 인플레이션이 서울대에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문장이라기보다는, 이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문장이라고 읽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언급된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학사 경고자 수와 학점 인플레이션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본 건에서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만이 드러난 자료들을 가지고, 증명되지 않은 인과관계가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문단을 배열한 데 핵심적인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사를 보면, 학점 인플레이션을 우려한 후에 바로 학사 경고자 수가 적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어서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마치 둘 간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상관관계가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이를 토대로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기사를 작

성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지만, 서로 상관관계인지 인과관계인지 일반인이 보기에 명확하지 않은 자료들을 마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주장하고, 그러한 의도에 맞게 배열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되지 않다고 보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는 독자들 스스로 판단할 기회의 영역을 좁히고, 독자들을 오해시킬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어떠한 제도에 허점이 있어서 향후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일어날 여지가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면, 이를 발 빠르게 보도하여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언론의 매우 중요한 역할일 것이며, 특히, 로스쿨이라는 제도는 우리 사회의 법조인을 양성하는 시스템으로서, 모든 국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어, 로스쿨과 관련된 제도에 조금이라도 문제점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제도를 수정하도록 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라는 점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이 언론인이 사실적 내용에 대해서 일반의 독자에게 오해를 사도록 하는 것이 면책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도는 보도대로 나가더라도, 이에 대해 사후적으로 판단하여 반론보도를 하는 것조차 막는다는 것은 반론보도의 액세스(access)권적 특징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앞서 살펴보았듯이 대법원의 판례 또한 이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을 어느 정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는 효과 또한 최소화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언론사측 입장

이 해 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 기사의 목적은 로스쿨 학점 제도의 허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현재 로스쿨 학생들이 웬만하면 A, B학점을 받고 있다는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현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로스쿨 제도는 우리 사회의 법조인을 양성하는 시스템으로 모든 국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공적인 사안이다. 특히 기사 작성시 서울대측에 반론의 기회를 제공한 이상 반론보도도 허용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언론사에서 반론의 기회를 제공하였지만 피해자 측에서 이를 무시한 경우 반론 보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언론사는 기사를 작성할 때 사실 전달만을 위한 기사를 작성하지는 않는다. 언론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는 사회에 대한 비판 기능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주어진 자료와 상황을 토대로 의심이 가는 상황에 대해 지적하는 기사도 작성하게 된다. 이때 문제되는 것은 이러한 추정적 기사가 실제 사실과는 다를 수 있고 독자들에게 그러한 추정적 사실이 현실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언론사의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만약 너무 쉽게 언론사의 책임을 인정해 버린다면 언론사의 사회 비판 기능은 마비될 것이고 반대로 언론사의 책임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면 언론사는 독자들의 관심을 끌만한 추측성 기사들을 남발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웬만하면 A, B학점... 로스쿨 성적 뺨튀기 꼼수”라는 제목의 2012년 2월 23일자 중앙일보 기사를 바탕으로 이러한 한계점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기사는 “웬만하면 A, B학점... 로스쿨 성적 뺨튀기 꼼수”라는 제목 아래 로스쿨에서 특정한 상황 속에서 학생들의 쉽게 A, B 학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서울대학교의 최초 수강신청자수 기준 학점 배분 방식에 의하면 만약 수강 신청인원의 반이 수강을 철회할 경우 모두 A 또는 B를 받을 수 있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바로 서울대에 학사경고자수 비율이 다른 학교 평균의 10%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 후 다른 학교의 제도를 지적하는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며 “성적 인플레이는 서울대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언급하였다.

여기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로스쿨생은 웬만하면 A, B 학점을 받는 것이 아니며, 서울대학교 학사관리제도와 학점 분포는 명백한 인과관계가 없고,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도 확인된 바 없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기사에서는 단순히 일어날 수 있는 현상에 대한 가상의 상황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 현황이나 수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또한 지나치게 극단적이고 실제로 자주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을 가정함으로써 독자들에게는 로스쿨의 실제 사정과 다르게 학사운영이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독자들에게 로스쿨에 대한 과도하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또한 기사는 처음에는 제도상 발생 가능한 가상의 상황으로 학점 인플레이션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내용으로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중반부 이후의 보도는 학점 인플레이션을 사실상 기정 사실화하고 있다.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은 서울대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문장은 이는 이미 서울대학교에는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단정적인 문장으로, 그러한 현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또한 학사경고자의 수가 2명인 것의 이유가 학점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

문인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여 독자로 하여금 학사 경고자가 두 명뿐인 것은 온전히 학점 인플레이션 때문인 것이라고 오해하게 할 여지도 크다고 주장 가능하다.

우선 이 기사를 쓴 목적은 실제 상황을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기사 목적은 로스쿨의 학점 제도의 허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기사는 현재 로스쿨 학생들이 웬만하면 A, B 학점을 받고 있다는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현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기사에서 이는 가정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명시하였기 때문에 독자들로 하여금 로스쿨에 대한 과도하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이러한 기사가 독자들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는 있다. 하지만 어떠한 제도에 허점이 있어서 향후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일어날 여지가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면, 이를 발 빠르게 보도하여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언론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로스쿨이라는 제도는 우리 사회의 법조인을 양성하는 시스템으로서, 모든 국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로스쿨과 관련된 제도에 조금이라도 문제점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제도를 수정하도록 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문제 발생에 대한 의혹이 가는 상황에서 독자들이 오해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사를 작성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언론의 문제제기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포기하게끔 하는 행위라고 봐야 할 것이다.

학점인플레이션이 서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문장은 학점 인플레이션이 서울대에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문장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이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문장이라고 읽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장 하나만으로 기사가 학점 인플레이션을 사실화하고 있다는 주장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기사가 인과관계를 단정하는 내용을 작성하여 독자들을 오해하게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론이 가능하다. 학점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고 학사 경고자의 비율이 타 학교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다면, 이 사이에서 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더라도 상관관계는 의심해볼 수 있다. 그리고 상관관계의 존재가 의심되는 이상, 이를 지적하는 기사를 작성하는 행위는 당연히 허용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기사에서 인과관계를 주장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점이 독자들에게 오해를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상관관계에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인과관계를 추정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품는 일은 언론의 사회적 책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로스쿨 측에서 학점에 관한 정보 등을 공개하지 않는 이상 기사를 작성하는 측에서는 공개된 자료만을 토대로 하여 기사를 작성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공개된 자료가 한정적이라면 결국 언론사에서는 추정적인 기사를 작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때 언론사에서 로스쿨 측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는데도 학교 측에서 반박할 자료를 제시하거나 반론을 펴지 않는다면 기사를 작성하는 사람은 최선의 주의를 다하여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서울대 관계자에게 질의한 결과 기사의 내용을 크게 부인한 바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사에 언급하였으므로 본 기사가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었다고도 볼 수도 없다. 즉 반론의 기회를 제공한 이상 반론보도도 허용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기사에서 서울대 로스쿨 측이 반박할만한 자료를 주었다면 이를 기사의 내용으로 삼았을 텐데, 서울대 측에 질의하였음에도 서울대에서 적극적인 반론을 하지 않았다. 언론사에서 반론의 기회를 제공하였지만 피해자 측에서 이를 무시한 경우 이는 반론 보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를 무시하였거나 반론을 하였지만 피해자 측의 의도와 달랐던 경우에는 반론이 허용되지만 위와 같은 경우 반론 보도가 인정되기 쉽지 않다고 할 것이다.

언론사는 합리적으로 의심이 가는 상황에 대하여 지적함으로써 이를 국민들에게 알릴 책무가 있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과 같이 국민들의 관심이 크고 우리 사회의 기득권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제도에 관하여는 더욱 그렇다. 물론 이러한 책무가 언론사의 잘못까지도 덮어주는 변명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기사를 작성하는데 기자로서의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비록 이로 인하여 기사가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의 피해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한계점은 언론사가 얻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의심이 가능한가에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만약 그 자료들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반인의 시각에서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면 여기에 대한 기사 작성도 언론의 사회 비판 기능의 일환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쟁 점 3 : 분석/해설 기사에서의 방법론적 오류

- <별지 3>, <별지 4> 기사를 중심으로 -

▶ 로스쿨측 입장

김 진 성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생의 ‘거주지’와 조인스 인물정보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된 법조인의 ‘출신지’를 비교하여 로스쿨에 부잣집 자녀가 더 많이 갔다고 보도했다. 이는 비교군의 설정 자체가 잘못된, 즉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오류가 있다. ‘거주지’와 ‘출생지’는 매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비교군의 연령대 측면을 간과하였다. 해당 로스쿨생의 연령대는 20-30대 초반인 반면에, 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존 법조인의 출생지는 사법연수원 34기 이상(현 42기) 전체를 대상으로 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또한 변호사시험이 사법시험의 커트라인과는 비슷한 점수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공인회계사 시험의 커트라인과 비교함으로써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자질을 폄하하려는 의도가 있다.”

분석기사는 사실적 자료인 통계자료 및 수치 등을 근거로 하여 특정한 사안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는 기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몇 개의 비교군을 설정하여 통계를 내고, 통계자료들 사이의 차이를 통해서 유의미한 인과관계를 도출해내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보통이다. 만약 분석기사내의 그 수치자체에 오류가 있어서 그로 인하여 일정한 피해가 있는 경우의 경우에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언론중재법) 제14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정보도’ 청구의 요건을 쉽게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글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분석 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계 수치 자체는 진실하지만 비교군의 설정 자체가 잘못된, 즉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오류가 있는 경우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중앙일보 2012.04.11자 기사인 <부잣집 자녀가 더 좋은 로스쿨 갔다>의 경우에도 이러한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위 기사에서는 ‘비싼 학비 문제로 법조계 진입장벽이 높아져 지방 출신 가난한 학생들, 이른바 ‘개천의 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본지 취재 결과 이 같은 우려는 사실로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로스쿨 1~3기의 ‘거주지’를 조사한 결과 서울/강남 출신의 인원이 많았던(61.4%) 반면에 조인스 인물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법조인 8115명(사법연수원 34기 이상)의 ‘출신지’를 조사한 결과 서울 출신은 고작 18.7%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군의 설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잘못되었는데, 첫째로 ‘거주지’와 ‘출생지’는 매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로스쿨에 진학하는 평균 나이인 20대 중반의 거주지는 대부분 학교나 직장을 중심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출생지’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와는 다르게 출생지보다 더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포할 수밖에 없으며, 게다가 현재 국내 전체 법학전문대학원 중 절반이 서울 내에 위치하고 있고, 부산대와 영남대에서는 로스쿨 재학생들의 거주지 정보 제공을 거부했기 때문에 더욱 더 로스쿨생의 거주지 분포는 서울에 집중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 둘째로 로스쿨생들의 거주지 조사에서 해당 로스쿨생의 연령대는 20-30대 초반인 반면에, 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존 법조인의 출생지는 사법연수원 34기 이상(현 42기)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인스 인물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기존 법조인에 관해서는 고교 평준화 이전의 기성세대의 정보가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연령대 측면에서의 차이 또한 기사에서는 간과되었다는 문제점 또한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분석의 ‘기준’이 서로 다르게 설정된 기사들에 대해서 기사의 당사자가 언론 조정·중재의 방법으로 대응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언론중재법 14조 1항의 정정보도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적용되기에는 어려운 면이 많다. 왜냐하면 거주지와 출신지 정보에 해당하는 그 수치 자체는 실제 정보와 다르게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중재법 14조 1항이 요건으로 하고 있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언론중재법 16조 1항의 반론보도청구의 경우는 어떠한가? 언론중재법은 반론보도청구에 대하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언론중재법 2조 17호의 정의조항에 따르면 반론보도란 ‘언론의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

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비록 진실하더라도 반론보도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 위 요건들 중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점은 과연 비교 기준을 잘못 설정한 것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인지, 그리고 만약 반론보도청구권의 요건을 만족시킨다고 본다면 반론보도의 내용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 위와 같은 분석 기사에서 쓰인 통계 자료는 우리 사회의 상황을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낸 것에 불과하며, 통계자료가 왜곡되었다거나 한 것 또한 아니기 때문에 만약 통계자료와 같은 사실적 자료를 취합하고 대조·분석하여,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것을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의견표명의 영역이라고 보게 된다면 그러한 입장에서는 반론보도 신청 또한 불가능하게 된다. 즉, 위와 같은 기사의 경우에는 거주지와 출신지에 대한 통계자료를 비교하여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 양성의 형평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사실적 주장”이라기보다는 “의견표명”에 가깝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 기사들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신청뿐만 아니라 반론보도 신청 또한 할 여지가 없다는 주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각건대 정정보도청구의 경우에는 법리상으로 이를 인정하는 것에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반론보도청구는 인정해야 할 것이다. 반론보도청구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그 기사를 쓴 기자의 본래 의도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두 집단을 비교하는 기사에서 두 집단의 비교를 의미가 있도록 쓰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집단을 비교한 기준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거의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기준이라는 전제가 바탕이 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두 집단을 비교하는 내용의 기사에서 두 기준이 서로 다른 기준이라면 이는 단순히 두 개의 자료를 나열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를 통해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추려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로 든 기사의 경우와 같은 경우에는 비교의 기준인 ‘거주지’와 ‘출신지’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내용이 이 기사에 묵시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두 비교 기준의 동일성의 판단은 두 비교 기준이 실제로 같은지/그렇지 않은지의 판단인 ‘사실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인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1항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론보도의 청구가 인용되어야 할 것이다.

언론중재법 2조 14호의 ‘사실적 주장’에 대한 정의조항을 살펴보면, “‘사실적 주장’이란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거주지와 출신지라는 두 개의 비교 기준이 서로 동일하지 않다는 내용은 개념 자체에서 이미 서로

갈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개의 기준이 서로 동일하지 않다는 것은 개념적으로 명백하다. 거주지는 통상적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장소’이며, 출신지는 통상적으로 ‘한 개인이 태어났을 당시의 장소’임은 ‘어휘상’ 명백하며 따라서 기본적으로 두 기준이 서로 다른 기준이라는 것은 이 이상의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없이 명백한 것이다. 따라서 오히려 이것이 서로 같다는 묵시적 전제를 하고 있는 언론 측에서 두 기준이 같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함을 증명할 의무를 띤다고 할 것이다.

또한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53214 판결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인데, 이 판례에서는 ‘사실적 주장과 논평·비평 등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보도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당해 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그 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보도가 게재한 것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사안에서도 일반의 시청자들이 보통의 주의로 이 보도를 접했을 때 거주지와 출신지가 동일하다는 것이 별다른 붙임말 없이 전제되어 보도되는 경우를 상정해 본다면, 이를 자료의 해석과 관련된 의견 표명으로 보기 보다는 두 개의 기준이 같은 내용이라는 사실판단을 전제로 하겠다고 생각할 요인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서로 다른 두 개의 기준이 같은 내용이라는 의견의 표명을 하려 했다면 이에 대한 증거 혹은 자료를 들어 구체적으로 증명하려 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 일반인의 입장에서 좀 더 합리적이다.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두 개의 기준이 사실적으로 동일한 기준이라고 무심히 판단하고 넘어가기를 바라는 의도가 숨어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언론의 보도기사이지, 고도의 전문성과 엄밀성을 요구하는 연구 등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내용이 아니라는 반론, 따라서 통계의 분석에 대해 과도한 정확성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또한 통계자료는 숫자와 더불어 그 해석 또한 중요한데, 해석은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견해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시와 같은 기사에서는 통계로 나타난 수치를 통해 로스쿨생의 서울 집중 현상, 사는 집의 평당 가격과 로스쿨 학교와의 상관관계를 우리 사회 현상으로서 지적하는 해석을 펼쳤던 것이며, 이러한 해석은 관점에 따라서는 충분히 가능한 것이었고, 기사의 의도는 ‘고비용 구조’에 대한 우려를 일반인들에게 시사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그 역할을 충분히 다하였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비교 대상이 붙임말 없이 다소 다르게 설정된 기사를 언론에 주어진 해석의

재량영역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즉, 통계자료를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여 다른 견해를 낼 수는 있어도, 언론의 반대측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틀렸다’, 혹은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는 주장인 것이다.

그러나 통계자료를 이용한 전문적인 성격의 기사가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비교대상의 선정을 일률적으로 해석, 재량의 문제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러한 기사들에 대한 대응의 실질적인 필요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만약 통계자료의 분석에 있어서 기준이 서로 다른 것을 모두 언론 재량의 영역으로 두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다른 기준을 가진 수많은 자료들을 의도적으로 혹은 실수로 동일 선상에 놓고 분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것이며, 이는 서로 다른 것을 마치 같은 것으로 ‘기망’ 혹은 ‘날조’하여 제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또한 비교 기준 설정의 문제는 단순히 동일성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비교 기준이 적절했는지의 문제로 광범위한 영역에서 지적될 수 있다. 예컨대 조선일보 2012.03.27.자 기사인 변호사 시험의 커트라인을 문제 삼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 치른 변호사시험 커트라인이 43점(100점 만점 기준)이라는데...’ 기사의 경우도 이러한 문제를 보여준다. 이는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 변호사시험의 커트라인을 공인회계사 시험의 커트라인과 비교하고, 같은 법조 직역의 자격시험인 사법시험의 커트라인과는 비슷한 점수임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비교하지 않음으로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자질을 폄하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으며,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실제적인 판단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반론보도청구권의 액세스(access)권적인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 언론사측 입장

정 세 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본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기 위해 통계자료를 사용한 것으로, 자료가 왜곡된 것이 아니므로 오보가 아니다. 또한, 거주지와 출신지에 대한 통계자료를 비교

하여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 양성의 형평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사실적 주장’ 이라기보다는 ‘의견표명’에 가깝다. 특히, 해당 기사는 언론의 보도기사로서 고도의 전문성과 엄밀성을 요구하는 연구 등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과는 차이가 있고, 따라서 통계의 분석에 대해 과도한 정확성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다.”

「부잣집 자녀가 더 좋은 로스쿨 갔다」(중앙일보, 2012년 4월 11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 치른 변호사시험 커트라인이 43점(100점 만점 기준)이란다...」(조선일보, 2012년 4월 27일) 각 제목의 기사는 각각 거주지 등에 대한 통계 자료와 시험 점수 등 수치와 같은, 사실적 자료를 이용한 기사들이다. 중앙일보 기사에서는 통계자료를 분석, 대조하여 로스쿨의 고비용 구조로 인해 지방 출신의 가난한 학생들의 법조계 진출이 어려워졌으며, 사는 집의 평당 가격이 높을수록 선호도가 높은 로스쿨에 진학하였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조선일보 기사에서는 변호사시험의 커트라인이 지나치게 낮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공인회계사의 합격점수와 이를 비교하였다.

이러한 기사들에 대해서는 통계나 수치 그 자체에는 왜곡이 없더라도, 적절하지 않은 비교군과의 대조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부정적인 결론을 도출하였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우선 첫 번째 기사의 경우, 로스쿨 측에서는 “거주지와 출신지는 동일하거나 혹은 실질적으로 유사한 비교 기준이 아니며, 이를 근거로 하여 비싼 학비 문제로 법조계 진입 장벽이 높아져 지방 출신 가난한 학생들이 법조계로 진입하기 어려워졌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내용으로 반론보도의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로스쿨 측의 주장에 대해 언론사는, 본 기사의 경우 반론보도청구에 관한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론보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할 수 있다.

우선 상기 규정에 따르면 반론보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어야 한다. 그런데 본 사안의 경우 사실적 자료인 통계자료 및 수치 그 자체의 적시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피해가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기사는 로스쿨생의 거주지 등에 대한 통계자료를 제시하여 로스쿨생 중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는데, 언론사 측에서는 이러한 통계자료는 현재의 사회상황을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낸 것에 불과하며 이러한 사실이 로스쿨의 입장에서 불편한 진실이라고 해서 피해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향변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언론중재법 규정에 따르면, 반론보도의 경우 그 보도 “내용”에 대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언론사 측에서는 본 기사의 경우 통계자료가 왜곡되었다거나 한 것이 아니므로, 이것에 대해서 ‘반론’을 할 여지도 없다고 항변이 가능하다. 한편 통계자료를 근거로 내린 결론에 대해서는 통계자료와 같은 사실적 자료를 취합하고 대조·분석하여,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의견표명의 영역임을 주장할 수 있다. 거주지와 출신지에 대한 통계자료를 비교하여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 양성의 형평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사실적 주장”이라기보다는 “의견표명”에 가깝고, 따라서 이에 대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는 불가능하다고 논리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표명”이라는 주장을 개진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고려하여 정교한 근거를 세울 필요가 있다. MBC “PD수첩”의 광우병보도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정 및 반론보도청구를 일부 인용한 대법원 2011.9.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을 보면,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은 대치되는 개념임을 인정하면서도, “사실적 주장과 논평·비평 등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보도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당해 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그 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보도가 게재한 것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을 고려해 볼 때 이 사안에서도 일반의 시청자들이 보통의 주의로 이 보도를 접했을 때, 거주지와 출신지가 동일하다는 것이 별다른 붙임말 없이 전제되어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자료의 해석과 관련된 내용이라기보다는 사실판단과 관련된 내용으로 생각할 요인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거주지’와 ‘출생지’는 매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로스쿨에 진학하는 평균 나이인 20대 중반의 거주지는 대부분 학교나 직장을 중심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출생지’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와는 다르게 출생지보다 더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재 국내 전체 법학전문대학원 중 절반이 서울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산대와 영남대에서는 로스쿨 재학생들의 거주지 정보 제공을 거부했음도 고려되어야 한다. 더욱이 대조군인 조인스 인물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주로 기존법조인들로서, 대개 사법연수원 34기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고교 평준화 이전의 기성세대의 정보가 상당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본 기사는 이와 같은 사실적 측면을 의도적으로, 혹은 실수로 간과한 채 작성되어진 것으로도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

극적 해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의 방법론적 오류에 대해 언론사 측에서는 본 통계자료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언론보도 자료에 쓰인 통계임을 강조할 수 있다. 곧 대상 기사는 언론의 보도기사로서 고도의 전문성과 엄밀성을 요구하는 연구 등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과는 차이가 있고, 따라서 통계의 분석에 대해 과도한 정확성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항변이 가능하다.

또한 통계자료는 숫자와 더불어 그 해석이 중요하며 해석이 없는 숫자는 단순한 수량에 불과하다. 그리고 구체적인 숫자에 대한 포괄적인 해석은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견해로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언론사 측에서는 통계자료를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여 다른 견해를 낼 수는 있어도, 로스쿨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틀렸다’, 혹은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항변할 수 있다. 본 기사는 통계로 나타난 수치를 통해 로스쿨생의 서울 집중 현상, 사는 집의 평당 가격과 로스쿨 학교와의 상관관계를 사회 현상으로서 지적하는 해석을 펼치고 있으며, 이러한 해석은 관점에 따라서는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즉 기사의 의도는 ‘고비용 구조’에 대한 우려를 일반인들에게 시사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자 한 것으로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거주지와 출생지의 비교는 조사대상의 연령대를 감안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언론에 주어진 해석의 재량영역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통계자료 자체는 사실의 영역이고 이의 해석은 의견표명의 영역으로서 언론사의 재량 한도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나친 이분법이라는 비판과 언론사의 책임회피라는 비난이 가능하다. 통계자료를 이용한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성격의 기사가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하면, 비교대상의 선정을 일률적으로 언론사의 해석이 절대적으로 중시되는 재량의 영역으로만 간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통계자료를 악의적으로 해석하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석 기준 등이 기사의 핵심적 내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면 반론보도의 청구를 넓게 인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두 번째 대상기사의 경우에도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난다. 조선일보의 2012년 4월 27일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 치른 변호사시험 커트라인이 43점(100점 만점 기준)이라는데...’ 기사는 변호사 시험의 커트라인 점수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사실 40점대 초반의 커트라인 점수는 같은 법조 직역의 시험인 사법시험의 커트라인과는 비슷한 점수이다. 기사는 사법시험의 점수는 언급하지 않은 채 변호사시험보다 커트라인이 높은 공인회계사 시험의 점수와 비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언론사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자질을 폄하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의도는 변호사시험을 공인중개사 시험과 비교한 한 변호사의 언질을 그대로 옮긴 기사 부분에서도 엿보인다.

언론사 측에서는 이 기사의 경우에도 첫 번째 기사와 유사한 논리로 대응할 수 있다. 본 기사에서 적시한 변호사시험과 공인회계사시험의 점수는 언론사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근거로 선택한 사실적인 자료로서, 자료 자체의 왜곡은 없다는 점을 항변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자료를 취합하고 대조하여 분석한 결론은 의견의 표명으로서, 사실에 대한 반론이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 가능하다. 변호사시험과 회계사시험은 모두 “자격시험”이기 때문에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적절한 비교 대상이며, 사법시험 2차는 선발시험이기 때문에, 사법시험 점수와의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는 논리로 언론사의 입장을 정당화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기사의 경우 첫 번째 기사와는 달리 수치를 비교하는 것이 기사의 주목적이 아니다. 기사 내용의 비중을 보면, 지면의 많은 부분을 변호사시험의 커트라인이 합격자의 머릿수를 맞추기 위해 낮은 점수로 결정되었다는 부분을 상세히 분석하는 데 할애하고 있으며, 회계사시험과의 비교는 이 점수가 어느 정도 낮은 수치인지를 명시하기 위해 단 두 개의 문장에서 언급되었을 뿐이다. 언론사 측에서는 이러한 점을 부각하여, 세세한 문장까지 곁고 넘어지는 언론보도의 자료해석에 대한 지나친 제한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을 주장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사실적 자료인 통계와 수치를 근거로 결론을 도출하는 기사들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문제를 제기할 경우, 언론사 측에서는 사실적 자료의 왜곡이 없음과 이러한 자료를 해석하는 것은 의견표명의 영역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주지한 바와 같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전문적인 성격의 기사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독자나 시청자들은 전문적 보도에서 언론사의 의견을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면,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언론사의 신중한 보도 자세와 반론보도청구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보 론 : 쟁점에 대한 실무적인 입장에서의 검토

김 문 중 (언론중재위원회 조사관, 변호사)

우선 일부 오보된 내용에 대해서 정정보도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 본다. 언론중재법 제 15조 제4항은 언론사가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를 그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그 의미에 대해 판례는 보도된 내용이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 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 이어서 이에 대한 시정이 올바른 여론 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 등을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지엽 말단적인 사소한 것이라면 기각사유가 될 수 있는데, 지엽 말단적인지의 여부는 사례별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 같다.

<별지 1> 기사의 경우 로스쿨생들이 취업에 유리한 과목에 수강이 몰려 그렇지 않은 과목은 폐강이 된다는 내용인데, 폐강 되는 여러 과목 중 몇 과목이 잘못되었다는 부분은 사안의 전반적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소한 것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법조윤리 등의 몇 과목이 폐강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이 지엽말단적이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다음으로 명예훼손 여부를 살펴보겠다. 명예훼손이란 결국 사회적 평가의 저하를 의미하는데, 취업 때문에 특정 과목에 몰린다는 것이 과연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인지는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보도에서는 로스쿨생 개개인을 표시하지 않고, 집단을 표시했기 때문에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어렵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다만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표현 등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며,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 계룡대 납품비리와 관련된 해군 법무

장교에 대한 기사에 대해 해당 해군장교의 수가 25명에 불과하다고 하여 명예훼손을 인정한 판례가 있고, 대전 법조비리 보도사건의 ‘대전 지역 검사들’이라는 표시에 대해 구성원의 수가 적다고 하여 명예훼손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그런데 서울대 로스쿨생이 약 450명이라고 하는데, 과연 개인의 명예훼손을 인정될 수 있을지는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손해배상에 대한 기자의 과실 여부인데, 과실이라는 것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해당 사안의 경우 적어도 과실은 있지 않나 싶다. 다만 이 문제는 위법성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 같다. 즉, 위법성 조각의 문제를 검토해야 하는데, 판례가 말하고 있는 상당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포르말린 통조림’이라고 하여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해당 언론사들은 검찰의 발표자료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했고, 통조림 제조업체 등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법원은 상당성을 인정했다. 해당 사안의 경우 교과부의 자료를 근거로 국회의원이 발표한 것이므로 상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별지 3> 기사에 대해서는 우선 사실적 주장에 대해 다루어지고 있는데, 객관적인 통계자료는 사실적 주장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명예훼손 성부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어야 하는데 부유하다는 사실을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물론 기사의 전반적인 내용이나 태도를 봤을 때 언짢고 불쾌할 수는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것은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 하기 보다는 단순히 주관적으로 명예감이 침해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만일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면 로스쿨생 개인의 명의가 아니라, 로스쿨생을 대표하는 단체의 명의로 조정신청을 해야 할 것 같다. 또한 이러한 보도에 대해서는 정정이나 반론 외에 적극적으로 로스쿨의 입장을 보도자료의 형태로 해서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조정의 절차는 법원의 판결 절차보다는 법적 판단에 있어서는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조정 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다.

김 정 민 (언론중재위원회 조사관)

우선 이 보도에 대해 반론보도를 청구한다면 청구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해당 보도의 취지는 로스쿨의 학사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학사 관리

의 주체인 각 로스쿨에서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경우에도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을지 검토해볼 수 있는데, 로스쿨의 학사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보도의 핵심 취지이고, 앞서 언급된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를 고려할 때 로스쿨 학생들이 직접적인 피해당사자로 인정되기는 어려운 사례가 아닌가 생각된다.

다음으로 이 보도에 대한 주요 쟁점인 반론보도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도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보도에서 로스쿨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요인은 바로 ‘성적 인플레이’, ‘성적 부풀리기’와 같은 부정적인 표현이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들은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언론중재법 제2조 제14호에 따르면 정정 또는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이란,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성적 인플레이’라는 표현은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 관계에 관한 주장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여러 사실적 주장을 근거로 한 의견 표명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다만 보도에서 의견 표명의 근거로 삼고 있는 내용 즉, 서울대 로스쿨의 경우 최초 신청자 기준으로 학점을 운용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실제로는 학점 배분이 균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는 ‘A나 B학점을 받는 학생의 수는 다른 제도적 장치로 인해 제한되어 보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는다’ 등의 반론 제기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가지 쟁점으로 언급되었던 부분이 서울대 로스쿨의 수강신청 사례였는데, 해당 보도는 실제 수강신청자가 50명인데 만약 최초 신청자가 100명이었다면 실제 수업을 들은 50명이 모두 A 또는 B를 받을 수 있다는 가상의 상황을 근거로 무리한 추측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비록 그 가능성은 적다하더라도 논리적으로는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고, 단지 극단적인 상황이라는 내용에 대해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반론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내용으로 보아 부정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이미 반론의 기회를 제공했는데 신청인 측에서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았으므로 반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 이는 실제 조정사례에서 많은 언론사측 대리인들이 항변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보도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반박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도된 사실에 대한 반론권이 부정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실제 조정에서도 이미 당사자의 반론이 반영되어 정당한 이익이 없거나, 사실에 반하는 반론을 요구하는 등 명백한 기각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론보도청구권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통상적이다.

기 타 의 견

정 재 헌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기자는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이나 가려진 부분을 밝혀내는 역할을 한다. 단순한 사실을 공표하기보다 사회에 문제가 될 만한 것에 대해 의제를 설정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킬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로스쿨 관련기사도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도되고 있는데, 오늘 토론회에서 로스쿨측을 대변하시는 패널들은 기사 중 일부분의 사실관계나 문장에 초점을 두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로스쿨 제도에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러한 문제들의 실제적인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한 후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결국 로스쿨 제도에 대한 언론보도를 종합해 보면 무언가 로스쿨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일종의 맥락이므로 기사내용 일부분에 초점을 두고 반박하기보다 로스쿨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제기된 문제의 일괄적인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오늘 제2세션에서 논의한 기사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부잣집 자녀가 더 좋은 로스쿨을 갔으니 돈 없는 서민들은 로스쿨에 입학하기 어렵고, 사법시험에 비해 로스쿨 출신이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결국 기사의 취지는 사법시험을 존치하고 예비시험을 도입하자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로스쿨측에서는 기사의 전체적인 맥락을 반박하기 위해 장학금 제도라든가, 로스쿨생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을 강조해야 한다.

장 성 원 (언론중재위원회 기사심의팀)

정정보도 요건과 손해배상 요건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 같다. 정정보도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이고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이 법과 판례이다. 따라서 첫 번째 논의사례에서 법조윤리과목이 폐강되지 않았다는 것은 언론사의 취재나 보도과정을 떠나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니므로 당연히 정정보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정정보도청구의 주체는 로스쿨 학생 개개인보다 각 대학 로스쿨이나 전국 로스쿨협의회가

적절할 것이라 생각한다.

손해배상의 경우,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이면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어야 하고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요건에 따라, 검찰의 공식 보도자료를 근거로 보도가 이뤄진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과 국회의원실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근거로 법조윤리과목이 폐강되었다고 보도한 이번 토론 사례에 대해 비교·분석하여 상당성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판단해 봐야 한다.

상당성 충족의 핵심 요건은 당사자에 대한 직접 취재이다. 따라서 당사자에 대해 직접 취재가 가능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기사가 서울대측에 법조윤리과목이 폐강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국회의원실의 자료를 근거로 보도한 것이라면 상당성을 인정할 여지는 부족하다.

두 번째 논의 사례인 ‘웬만하면 A, B 학점 ... 로스쿨 성적 뺨튀기 꼼수’ 제목의 기사에서는 핵심 팩트가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기사에서는 2010년 “당시 로스쿨들은 A(25%), B(50%), C(21%), D(4%) 등의 비율을 정해 학점을 배분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학점 배분·학점 포기 등의 방식으로 이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고 보도했는데, 2011년도 각 학교별 실제 A, B 학점이 어떻게 배분되었는지 언론이 확인했어야 한다. 이에 대한 확인이나 자료제시 없이 ‘웬만하면 A, B 학점 ...’ 이라고 제목을 정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기사에서는 주요 6개 학교의 로스쿨 성적 인플레이 방법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 학교 중 인플레이 방법 3개 모두를 채택한 학교는 없고 1~2개 정도였다는 점도 따져볼 팩트다.

세 번째 논의 사례에서는 로스쿨생은 거주지를, 기존 법조인은 출생지를 기준으로 한 통계자료를 제시했다. 기존 법조인의 경우에도 현재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다면 서울이 더 많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 법조인의 경우 서울출신은 고작 18.7%인데 비해 전체 로스쿨생의 61.4%가 서울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해 기사 내용을 합리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정보도청구가 가능할 것이라 본다.

김 종 량 (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

오늘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중재위원으로서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 저는 30년 이상 전북

일보에서 근무하였는데, 일선에서 취재할 당시와 현재 중재위원으로 활동할 때의 많은 차이가 있다.

심리에 참석해 신청인과 언론사측의 주장을 들어 보면 양 당사자의 입장이 다 옳은 것 같다. 다만 언론사측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나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이유로 허위보도나 오보에 대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보도에 앞서 당사자에게 기사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반론의 기회를 줘야 한다. 보도의 긴급성에 따른 시간상의 이유와 국회의원의 발표 등 여타 신뢰할 만한 자료를 근거로 보도하였다며 취재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취재 과정을 정당화하지 말고 실질적인 확인을 해야 할 책임이 기자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신청인측에서도 과연 해당기사가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단체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었는지,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전제된 기사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전자의 경우라면 당연히 징계를 해야겠으나, 후자의 경우라면 그 대응에 있어 유념해야 한다. 오늘 토론에 참석한 학생들도 조만간 법조계로 진출할 것인데 이에 대한 통찰을 가지고 사안을 판단해 주기 바란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립성이나 중재위원의 자질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현직 부장판사들이 중재부장을 맡아 공평무사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또한 언론중재법 제8조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중재위원은 직무상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아니하며,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 있다면 중재위원으로서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므로 중재위원이 정치적인 이유에서 정부기관을 편들거나 하는 일은 없다. 제 경험상으로도 지금까지 정부기관을 비롯해 외부의 어떤 압력을 받은 적이 없다.

다만 심리에 참석하다 보면 언론사측으로부터 언론계 선배인 중재위원들이 언론의 편을 들지 않고 오히려 후배 기자들을 압박하고 언론을 길들이는 역할을 하느냐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반면 신청인 중에는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언론사 편만 든다는 시각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중재위원들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당사자의 신뢰를 받기 위해 중립적으로 판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길 바란다.

〈별지 1〉

「취업 도움 안되면 줄줄이 폐강, 로스쿨의 학원화」(2011년 7월 18일자 조선일보)

판검사 임용 · 로펌 취업 유리한 형사소송법 등에 수강 몰려,
국제법 · 지방자치법 등은 수강생 인원 미달... 다양한 법조인 양성 취지 퇴색

※ 기사 중 그림, 도표는 생략하였음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형사소송법과 상거래법처럼 판·검사 임용 또는 대형 로펌 취업에 도움되는 강의를 집중적으로 듣지만, 국제법·지방자치법처럼 취업과 큰 상관이 없는 과목들은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로스쿨 도입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주광덕 국회의원(경기 구리)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은 전국 15개 로스쿨의 수강 현황에 따르면, 서울대 로스쿨에서 올봄 개설하려던 94개 강의 중 13개가 수강 인원 미달로 폐강됐다. 폐강된 강의가 작년 2학기(7개)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원광대 로스쿨은 작년 2학기 2개에서 올봄 13개로 급증했고, 충북대·인하대·중앙대는 작년 2학기 폐강된 강의가 없었지만 올해는 각각 6·5·4개였다.

서울대 로스쿨에서 일부 또는 전부 폐강된 과목은 헌법소송법, 정당과 민주헌정, 헌법실무연습, 법조윤리, 법률정보조사 및 법문서 작성, 국제경제·통상법 등이다. 현대인권론은 수강생이 1명뿐이었다. 농업법, 한국근현대법사, 협상과 거래의 디자인, 현대정의론과 법, 중국법, 건설행정법, 조세법연습, 국제투자실무 강의도 수강생이 5명도 안 됐다. 특히 국제법 분야에 해당하는 과목들 가운데 국제경제·통상법 과목이 수강생이 없어 폐강됐는가 하면, 국제투자실무(4명)·중국법(4명)·국제민사소송법(6명)·국제거래법개론(9명)·국제지적재산권(9명) 등도 학생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반면 판·검사 임용이나 대형 로펌 취업에 도움이 되는 과목으로 분류되는 상거래법(154명)과 형사소송법(107명), 민법(91명), 회사법(80명) 강의 등은 수강생이 몰렸다. 작년 2학기에도 법무실

습(121명)과 민법(81명), 민사소송법(83명), 보험법(86명), 검찰실무(80명) 등이 인기 강의였다.

이 같은 수강생 편중 현상은 올해부터 강화된 학사 관리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국 25개 로스쿨은 지난 학기부터 '학점 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해 상대평가를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는데, 수강생이 적은 강의는 학점 따기에도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다. 서울대 로스쿨의 한 학생은 "평소 국제법에 관심이 많았지만 변호사 시험에 도움이 안 되고 학점 따기도 어려울 것 같아 포기했다"고 말했다. 주광덕 의원은 "전국 25개 로스쿨 중 연세대·고려대 등 10개 학교가 민감한 내용이라는 이유로 수강 현황 공개를 거부할 만큼 수강 편중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서울대 로스쿨 정종섭 원장은 "미국처럼 학사 관리를 학교 자율에 맡기고 나중에 법률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받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별지 2〉

「웬만하면 A, B 학점 ... 로스쿨 성적 뺑튀기 꿈수」(2012년 2월 23일자 중앙일보)

졸업생 취업을 높이려 변칙 학점 배분, 재수강 허용
서울대 학사경고자 2명분

※ 기사 중 그림, 도표는 생략하였음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올해 첫 졸업생을 배출하는 가운데 주요 로스쿨이 졸업생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성적을 인위적으로 부풀렸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법조계와 대학 등에 따르면 서울대 등 주요 로스쿨은 변칙적 장치를 통해 '성적 인플레이'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같은 학사관리 방식이 문제가 되는 것은 2010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높게 책정되면서 변호사 양산이 우려되자 로스쿨협의회에서 "학사관리를 엄정히 하겠다"고 천명했기 때문이다. 당시 로스쿨들은 A(25%), B(50%), C(21%), D(4%) 등의 비율을 정해 학점을 배분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학점 배분·학점 포기 등의 방식으로 이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대 로스쿨은 실제 수강인원이 아닌 최초 수강신청자 수 기준으로 학점을 배분함으로써 낮은 학점을 받는 인원을 줄이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대 로스쿨은 특정 수업을 50명이 들었더라도 학기 초 100명이 수강신청을 했다면 최초 신청자 수인 100명을 기준으로 학점을 배분한다. 50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C학점 이하가 약 12명(25%)은 나와야 하지만 100명을 기준으로 하면 실제로 수업을 들은 50명이 모두 A 또는 B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실이 공개한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관리 강화 방안에 따른 학사경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학기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 415명 가운데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2명(0.48%)뿐이었다. 학사 경고 대상은 ‘평균 학점 2.0 이하’에 해당하는 학생이다.

이 같은 학사경고 비율은 전국 최저 수준으로 25개 로스쿨 평균인 4.69%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전북대는 233명 중 18명(7.73%)이 학사경고를 받아 서울대의 16배에 달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관계자는 “로스쿨 성적 부여 방식은 학부 관례를 따른 것”이라며 “수강신청 취소가 많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성적 인플레이’는 서울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대는 최초 수강신청자 기준 학점배분을 하는 대신 재수강 제도가 없다. 반면 대부분의 로스쿨은 C학점 이하에 대해 재수강을 허용하고 있다. 한 로스쿨 교수는 익명을 전제로 “성적이 안 좋으면 같은 강의를 다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재수강이야말로 ‘성적 바뀌치기’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버드대 등 미국 로스쿨에서는 성적이 나쁠 경우 학장 주도로 재수강을 명령한다. 재수강이 일종의 징계 개념인 것이다. 또 성적표에 원래 성적과 재수강 성적을 둘 다 기록한다.

이와 함께 고려대·이화여대 등이 시행하고 있는 학점포기제도 논란의 대상이다. 학점포기제는 졸업을 앞두고 낮은 학점을 털어버린 뒤 쉬운 과목을 들어 학점을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로스쿨협의회 관계자는 “성적이 법원·검찰에 들어가거나 로펌 등에 취업하는 데 있어 기초 자료가 되는데다 학교의 명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 로스쿨이 학점 부풀리기 경쟁을 벌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적을 어떻게 매기고 배분하는지는 각 학교가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사안이지만 조만간 협의회 차원에서 통일된 성적 기준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별지 3〉

「부잣집 자녀가 더 좋은 로스쿨 갔다」(2012년 4월 11일자 중앙일보)

[탐사 기획] 전국 로스쿨생 5074명 분석해보니 로스쿨 1·2·3기생
주거지·출신대학·전공 분석 ... 고비용 구조에 사라지는 '개천의 용'

※ 기사 중 그림, 도표는 생략하였음

서울 소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다니는 3학년 김모(32)씨는 지난 겨울방학 때 비아그라 복제약 생동성 실험에 참여했다. 3일간 '실험용 인간'이 된 대가로 받은 돈은 40만원. 김씨는 “지난 2년간 5000만원 넘게 쓰는 바람에 저축이 바닥나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입학 전 3년간 직장생활을 했던 나도 이런데 부모 도움 없이 로스쿨에 다닌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지난달 1451명의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로스쿨 변호사'가 등장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새로운 법조인의 등장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비싼 학비 문제로 법조계 진입장벽이 높아져 지방 출신 가난한 학생들, 이른바 '개천의 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 취재 결과 이 같은 우려는 사실로 확인됐다.

◆로스쿨생 5명 중 1명은 강남 사람=탐사팀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5개 로스쿨 1, 2, 3기생(2009~2011년 입학)의 거주지 정보(지난해 말 기준 5074명, 부산대·영남대 공개 거부, 아주대·연세대는 일부 학생 누락)를 확보했다. 분석 결과 전체 로스쿨생의 61.4%가 서울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 조인스 인물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법조인 8115명(사법연수원 34기 이상) 중 서울 출신은 고작 18.7%다. 서울에 주소지를 둔 학생 중 부촌으로 알려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거주 비율은 27.2%에 달했다. 반면에 주택 가격이 낮은 금천(0.6%)·도봉(1.3%)·중랑(1.0%)구에는 수십 명 정도만 거주했다.

전체 로스쿨생의 거주지 비율을 시·군·구별로 보면 관악구가 9.4%로 제일 높았다. 서울대와 고시촌이 위치한 지역적 특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서초(6.4%)·강남(6.0%)·송파(4.3%)·동대문(3.9%) 순으로 강남 3구 거주 비율은 16.7%였다. 2010년 말 기준 강남 3구의 인구 비중은 전체의 3.2%다. 서울을 제외한 시·군·구에서 1% 이상 로스쿨생을 배출한 곳은 경기도 성남(2.31%)·용인(1.54%) 등 6곳에 그쳤다. 지난해까지 대한변협 기획이사로 로스쿨 업무를 담당했던 임치용(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경제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세습되는, 희망이 사라진 시대의 우울한 단면”이라고 말했다.

◆집값 높을수록 잘나가는 로스쿨 진학=경제력은 학생들의 로스쿨 선택에도 영향을 미쳤다. 본지가 KAIST 이원재(사회학) 교수에게 의뢰해 로스쿨생 거주지 정보와 조인스랜드의 전국 시·군·구별 주택 평당 매매가 정보를 결합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 가격이 높은 지역에 살수록 선호도가 높은 로스쿨에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최상위권으로 분류된 1그룹 로스쿨에 다니는 학생 중 23.2%가 부동산 가격이 상위 25%(3.3㎡당 2433만원 이상)에 속하는 서울 강남·서초구 등에 살았다. 이 비율은 2그룹 로스쿨에서는 17.9%로 떨어졌고 3, 4그룹에서는 9%대로 급감했다. 반면에 하위 25%(3.3㎡당 786만원 이하) 지역 거주자 비율은 1그룹에서는 13.8%였으나 3, 4그룹에서는 각각 44.0%와 40.0%로 높았다.

이 같은 경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졌다. 고급 상관관계 분석 방법(로그리니어)을 이용한 결과 로스쿨 2기생은 부동산 가격이 한 단계 오를 때마다 1그룹 학교 학생일 확률이 6%, 2그룹 학교 학생일 확률이 110% 증가했다. 3기생은 부동산 가격이 한 단계 높을 때 1그룹일 확률이 35%, 2그룹일 확률은 51% 늘었다. 이 교수는 “부유할수록 더 좋은 로스쿨에 진학한다는 가설이 99.9%의 확률로 입증됐다”며 “1기생에선 떨었던 경제-학교 수준 사이의 상관관계가 2, 3기생이 될수록 명확해져 경제적 불평등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스쿨 선호도는 해당 학교가 최근 사법시험에서 보여준 성과로 결정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41, 42기 사법연수생의 출신대학 정보(연간 평균)를 기준으로 4그룹으로 나뉘었다. 부동산 가격은 입학 직전 연도 주택 평당 매매가를 기준으로 4등급으로 나뉘었다.

◆비싼 학비와 스펙 보는 면접이 진입장벽=지역은 편중됐지만 출신과 전공은 다양해졌다. 기준

법조인에서는 51.1%에 달했던 서울대 비율은 로스쿨에서는 22.7%로 줄었다. 대신 연세대(6.5% →14.8%), 한양대(1.9%→4.7%) 등의 비중이 높아졌다. 법학 전공자도 현직 법조인은 68.7%였으나 로스쿨생은 40.8%로 낮아졌다.

신영미 메가로스쿨 신촌캠퍼스 원장은 “비법대 출신과 본교 학부 졸업생의 합격자 비율을 제한한 결과 대학과 전공은 많이 다양해졌다”며 “하지만 스펙과 경력을 보는 면접 반영 비율(10~40%)이 높아 생계와 학업을 병행해 온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불리한 데다 사립 기준 연 2000만원 정도인 등록금 부담도 만만치 않아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조계 내에서는 일본의 예비시험 제도 도입이 저소득층에 대한 로스쿨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는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오욱환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학비 때문에 로스쿨에 못 가더라도 변호사 시험을 치를 수 있게 자격을 부여하는 일종의 ‘검정고시’ 격인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별지 4〉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 치른 변호사시험 커트라인이
43점(100점 만점 기준)이라는데... (2012년 3월 27일자 조선일보)
과락 기준만 간신히 넘긴 수준... “당장 제 역할 가능할까” 지적

※ 기사 중 그림, 도표는 생략하였음

법무부는 지난 23일 로스쿨 수료생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변호사 자격시험에서 응시자 1665명 가운데 720점 이상을 받은 1451명을 합격시켰다. 그런데 합격 기준이 된 720점은 100점 만점(총점은 1660점)으로 따지면 43점으로 과목별 과락(科落) 기준인 40점을 가까스로 넘긴 수준이다. 법조계에선 법무부의 기준이 너무 관대하고, 이런 식으로 뽑힌 하위 성적의 변호사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시험은 선발 정원(작년 약 700명)을 정해놓고 고득점자부터 등수를 매겨 선발하는 정원제 시험인 사법시험과는 선발 방식이 다르다. 과목별 과락(40점)이 있는 것은 같지만 일정기준(합격 기준)을 넘으면 전부 선발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번 시험에 사실상 ‘정원제’가 적용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로스쿨 학생들은 지난 2010년 12월 경기 과천의 정부청사 앞에서 “변호사 시험 합격을 보장하라”며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이후 법무부는 “로스쿨생 정원 2000명 가운데 1500명가량을 변호사로 뽑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이번 시험 합격자 1451명은 법무부가 ‘약속’한 1500명의 근사치이다. 결국 로스쿨 학생들의 집단 민원에 밀려 법무부가 자격 미달 수료생들에게도 변호사 자격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87%가 넘는 이번 시험 합격률은 공인회계사 2차 시험의 합격률이 30%대인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것이다. 이런 차이는 회계사 시험은 합격기준을 60점으로 잡아 과목별 과락과 별개로 부자격자를 걸러내는 장치를 둔 반면, 변호사 시험은 사실상 합격 기준이 기준으로서의 의미가 없다는 점 때문에 생겼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인중개사도 60점 이상은 받아야 합격인데 반타작도 못한 사람까지 구제해주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법무부가 채점을 후하게 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한다. 이번 시험에서 과락자는 193명으로 전체의 11.59%였는데, 채점위원이었던 한 로스쿨 교수는 “내가 보기엔 30~40%는 과락 수준”이라고 했다.

로스쿨 수료생들 가운데는 사시합격자 못지않은 법률 실력과 함께 전문지식을 갖춘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수료생들은 변호사 자격시험을 통과하기도 전에 로펌들의 입도선매(立稻先賣) 표적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보다는 “당장 재판에 투입할 수 있을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큰 편이다. 경북대 로스쿨의 신평 교수는 “새로운 표준 교과과정을 만들어 교육방식부터 바꾸고, 유럽처럼 논리 능력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시험 유형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